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금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015 발의연월일 : 2023. 5. 15.

발 의 자:양금희·서병수·지성호

이용호 · 조명희 · 노용호

홍석준・박 진・이종성

이태규 · 엄태영 · 서범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, 주식,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개별 법률에 의하여 재산적·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어, 가상자산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현금, 주식, 채권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,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·신고 및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

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"신용정보회사등"을 "신용정보회사등,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"로, "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"를 "말한다. 이하 이조 및 제8조제5항에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	②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동산·증권·채	3
권·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識	
財産權)	
가. ~ 카. (생 략)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
	이상의 「특정 금융거래정
	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
	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
	<u>따른 가상자산</u>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5(금융거래정보·부동산정	제6조의5(금융거래정보·부동산정
보의 제공 및 활용 등) ① 공	보의 제공 및 활용 등) ①
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,	
제6조제1항·제2항, 제10조제2항	
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	
또는 신고(이하 이 조에서 "재	
산등록·신고"라 한다)를 위하여	
필요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	

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| 제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| 제33조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』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 다)을 이용하여 금융기관(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 액에 관한 자료(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

 <u>신용정보회사등,</u>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
 <u>신용정보회사등,</u>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말한다. 이하 이 조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말한다. 이하 이 조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말한다. 이하 이 조
<u>신용정보회사등,</u>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말한다. 이하 이 조

금융기관의 장은 「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 및 「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 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 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 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생 략)